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가합62265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박선희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강창식

변론 종결2024. 9. 25.

판결 선고2024. 11. 27.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0.부터 2023. 4.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방산전 계측장치 연구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B은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사내이사, 피고 C는 감사이다.

2) D의 2022. 5. 13.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전체 발행주식의 총 200,000주를 원고가 130,000주(65%), 대표이사인 F이 60,000주(30%), G, H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각 5,000주(2.5%)씩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

나. D과 E, 피고 B의 금전거래관계

D은 2019. 7. 31.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아래와 같이 E 또는 피고 B에게 합계 9억 원을 송금하였다.

1	2019. 7. 31.	D → E	5억 원
2	2019. 9. 2.	D → E	1억 원
3	2019. 10. 21.	D → 피고 B	2억 원
4	2019. 11. 1.	D → E	1억 원
합계	9억 원		

다. 원고와 피고들의 회의록 작성

원고와 피고들, F은 2021. 1. 8.부터 2022. 4. 20.까지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회의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회의록에서 'T'은 피고들을, 'J'은 원고와 F을 의미한다).1)

<2021. 1. 8.자 I과 J 회의록>

○ 의결사항:

안건 1. BM(현금, 이하 같다) 및 D 투자금에 대한 계획

- BM 2.2억 원 및 에 대한 D 투자금 9억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환함.

(1) 포항에 있는 K 상가(현재 13개) 처분.

(2) 매달 L의 매입대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을 받아서 상환.

(3) 이외에도 영업이익이나 M상가, 추가대출 등을 이용하여 상환.

- BM의 원금(2.2억 원) 상환은 2월 28일까지 하기로 함.

- BM의 이자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원금(2.5억 원)의 1%/월(총액 25,000,000원)로, 2021년 1월부터 원금(2.2억 원)의 5%/월(총액 22,000,000원)로 계산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함.

- 투자금 9억 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기로 함.

<2021. 2. 19.자 I과 J 회의록>

○ 의결사항:

안건 1. N와 의 관계 설정

- 원고는 BM(1.3억)과 I 투자금(6.5억)이 모두 회수되면 N에서 빠진다. 즉 원고 관련 지분을 모두 양도하기로 한다.

- D 소유로 되어 있는 포항 ○동 토지는 BM과 I 투자금이 모두 정리된 다음 I이 요청하는 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안건 2. BM 및 D의 투자금에 대한 상환 추진 방법

(1) 포항에 있는 K 상가(현재 13개) 및 M상가를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서 상환한다.
K는 먼저 F 대표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진행한다.

(2)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여 상환한다.

(3) C 전무의 상속건물에 대한 추가대출을 일으켜 상환한다.

안건 3. BM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

- 원고의 BM(1.3억)은 최대한 빨리 우선적으로 상환하되 늦어도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상환하도록 한다.

- BM의 이자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원금(2.5억원)의 1%/월, 10개월분 25,000,000원과, 2021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원금(2.2억원)의 5%/월, 2개월분 22,000,000원에 대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총액 4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BM의 원금이 2021년 2월말에 상환되지 못할 경우, 2021년 3월부터는 원고 BM(1.3억)에 대한

이자를 5%/월(6,500,000원)로 계산하여 매월 말에 지급하기로 한다.

안건 4. D의 투자금 및 이익금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

- 원고의 투자금(6.5억)은 BM 상환이 끝난 후 최대한 빨리 상환하되 늦어도 2021. 12. 31.까지는 상환하도록 한다.

- D에 대한 2020년 미지급 수익금 1500만원(8월분)과 800만원(12월분)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늦어도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지급하도록 한다.

- D의 투자금(9억)에 대한 이익금 1%/월(약 10,400,000원)은 2021년 2월부터는 매월 말 지급하되 원금이 상환되면 남은 원금에 대해서 계산하여 지급한다.

<2022. 4. 20.자 |과 J 회의록>

○ 토의 및 의결사항:

1. | 투자 6.5억

BM 0.5억

→ 투자는 차용으로 전환함 / 총 7억 설정금액

- 설정: P빌딩(Q)

- 상환기일: 2023년 4월 30.일

- 이자: 연 6%(설정일부터 적용)

- 연체이자: 연 20%

- BM 0.5억은 최대한 빨리 상환

- 채권최고액은 상황에 따라 10% 추가 가능함

- 설정일은 4월 30일까지 한다.

- 채권자: 원고 / 채무자: E / 연대보증 : 피고 B, C

2. 기존 밀린 이자

- 금액: 연 6%, 4,200만 원

- 서강대 사무실 임대료: 380만 원

- 상환 기간: 2022년 12월 31.일

- BM 추가 이자는 별도 지급 2022년 12월 31.일까지

3. O동 토지 반환

- 시점: ① P빌딩 엘리베이터 완공 시점

②L 설정된 담보 해지 시

- 위 둘 중 하나가 실행되었을 때 반환 시점으로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F은 D 계좌를 이용하여 E에 9억 원(= 원고 6억 5,000만 원 + F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추가로 현금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E이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원고의 잔존 대여금이 7억 원(= 6억 5,000만 원 + 1억 6,000만 원 - 1억 1,000만 원)인 상태에서, 피고들은 2022. 4. 20.자 I과 J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하고, 그 회의록(갑 제8호증)을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로 잔존 대여금 7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E이 변제기인 2023. 4. 30.까지 잔존 대여금 7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7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E의 대여금 채권자는 D이지, 원고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회의록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대로, 2019. 7. 31.부터 같은 해 11. 1.까지 D 명의 계좌에서 E 및 피고 B 명의 계좌로 합계 9억 원이 이체되었고, 원고와 피고들은 위 9억 원의 변제 계획에 대하여 3회에 걸쳐 회의하였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회의에서 D의 E에 대한 투자금 7억 원을,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가 E, 연대보증인이 피고들인 원금 7억 원, 변제기 2023. 4. 30., 이자 연 6%인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하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C가 상속받은 포항시 남구 Q 소재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회의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의 돈으로 D의 E에 대한 투자금이 조성된 것을 고려하여, 이 사건 회의에서 D의 E에 대한 투자금 7억 원을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 소유인 포항시 남구 Q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설정 시 필요한 등기원인서류로서 피고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 등의 작성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의 이후인 2022. 4. 25. 피고들에게 이 사건 회의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며 담보확약서(을 제2호증)를 교부하였고, 이 담보확약서에는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C, 연대보증인: 피고 B, 채무금: 7억 원, 이자: 연 6%(연체이자 연 20%), 변제기: 6억 5,000만 원은 2023. 4. 30., 나머지 5,000만 원은 2022. 5. 31., 담보설정: 상기 채무금과 이자를 담보하기 위해 포항시 남구 Q 소재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22. 4.

30.까지 완료한다'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회의록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채무자, 연대보증인, 변제기 등 내용과 일부 달라져 있었다.

③ 피고 B은 2022. 4. 26. 원고에게 '원고가 작성한 담보확약서는 이 사건 회의록과 비교해 볼 때 원고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재협의를 필요하다'고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어떤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알려주면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④ 피고 B은 2022. 6. 2. 원고에게 협약서(갑 제13호증)를 교부하였는데, 이 협약서에는 '채권자: 원고, 채무자: E, 연대보증인: 피고 B, C, 변제기: 6억 원은 2023. 4. 30.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은 최대한 빨리 상환한다, 담보설정: 상기 채무금과 이자를 담보하기 위해 포항시 남구 Q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22. 6. 30. 전까지 완료한다'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변제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담보확약서와 피고 B의 협약서 모두 최종적으로 작성되지 못하였다.

⑤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B의 이 사건 회의 이후의 대화 및 피고들의 거부로 인하여 최종적으로는 담보확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고, 근저당권도 설정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위 회의에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회의록 또한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고, 상단에 있는 피고들의 참석자 서명도 회의 참석 여부와 논의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 위 회의록을 피고들의 연대보증 의사를 확정적으로 기재한 처분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수

판사서하나

판사신진경

1) J은 'N'를 의미하는데, N는 의료용기기 연구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N의 사내이사, F은 대표이사이다(을 제1호증).